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규정

제1편 총칙

제1장 학생자치법정

제1조(명칭)

본 법정은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이하 학생자치법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 ① 학생자치법정과 그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은 학생 스스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며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효력범위)

- ① 이 규정은 학생자치법정의 모든 활동에 효력을 가진다.
- ② 공식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규정은 본 규정에 따라 본회에 소속된 모든 인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제4조(운영원칙)

-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민주 시민 교육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을 존중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내 학생 교육처분 재판 및 이행확인
 2. 학교 규정 개정 필요 여부 심판
 3. 규정 개정 진정서 제출
 4. 학생부 상호간, 학생회와 학생부 상호간, 교사와 학생회 및 학생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학생회원과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탄핵 심판

제5조(책무)

- ① 법정 구성원은 직책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학생자치법정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법정 구성원의 모든 지위와 권한은 학생자치법정과 그 직무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제5조의2(품위유지의 의무)

법정 구성원은 직책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3(비밀준수의 의무)

법정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제2장 학생자치법정의 구성

제1절 관사

제6조(관사의 직무)

- ① 관사는 학생자치법정을 대표하며 모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 ② 관사는 판결에 따른 교육처분 이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관리·승인한다.
- ③ 관사는 학생회장을 통해 수립된 의견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심의 과정에서 학생대표 3인 중 1인으로 참석한다.
- ④ 심의 깊은 선거와 학생자치법정의 발전을 위해 관사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자치 법정 홍보와 법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사의 책무)

- ① 관사는 「학교생활인권규정」과 「학생자치법정규정」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조(관사의 자격 및 선출)

- ① 관사는 동급 학년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급 학년의 재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관사는 국제 계열 1인, 국내 계열 1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선출 시기)

- ① 관사 선거는 2학기 초에 실시한다.
- ② 당해 학기 초에 선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제10조(관사의 임기)

- ① 관사의 임기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로 한다.
- ② 관사는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 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탄핵의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③ 탄핵의 신고는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출된 관사의 품행이 관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임 관사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전임 관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 전임 관사의 임기가 다했을 시에는 학생회장단의 판단에 따라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검직 금지)

- ① 판사는 학생회 또는 학생부서 및 특별부서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판사가 다른 직에 당선될 시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절 검사

제12조(검사의 직무)

-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1. 사건조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2.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생활인권규정」의 정당한 적용 청구
 - 3. 재판 집행 지휘·감독
 - 4. 재판 진행 시 관련 규칙 검토
 - 5. 「학교생활인권규정」과 「학생자치법정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검사는 판결에 따른 교육처분 이행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③ 검사는 원고의 입장을 성실히 대변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책무)

- 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전교생 전체에 대해 봉사자로서 「학교생활인권규정」과 「학생자치법정규정」에 근거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의 자격 및 임명)

- ① 검사는 국내 또는 국제 계열이 3인이 되지 않게 3인을 임명한다.
- ② 검사의 임명 과정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및 면접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단, 지원 절차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임명 시기)

- ① 판사가 선출된 후 해당 학기에 검사를 임명한다.

제16조(검사의 임기)

- ① 검사의 임기는 판사와 동일하다.
- ② 검사가 탄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 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탄핵의 신고
 - 2-1 탄핵의 신고는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출된 검사의 품행이 검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임 판사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전임 판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 전임 판사의 임기가 다했을 시에는 학생회장단의 판단에 따라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 3.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3회 이상의 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 4. 판사가 정한 탄핵 기준에 부합할 경우

4-1. 판사는 사전에 기준을 공지 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는 부당한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판사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변호사

제17조(변호사의 직무)

①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교육처분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 사무를 그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을 성실히 대변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공판을 제외한 재판에서 원고의 입장을 성실히 대변하여야 한다.

제18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19조의2(변호사의 책무)

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교내질서 유지와 교내 규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변호사의 자격 및 임명)

제14조의 규정은 변호사의 자격 및 임명에 준용한다.

제21조(변호사의 임명 시기)

제15조의 규정은 변호사의 임명 시기에 준용한다.

제22조(변호사의 임기)

제17조의 규정은 변호사의 임기에 준용한다.

제23조 (원고의 직접변호)

원고는 학생자치법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

제2편 교육처분 재판 및 이행확인

제1장 통칙

제1절 교육처분

제24조(교육처분)

- ① 교육처분이란 일정한 행동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긍정적 처분을 말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의 교육처분은 처벌이 아니므로 피고는 학생자치법정 이외의 상황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혹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은 교육처분의 기준이 된 학칙 또는 학생회칙 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등 학교전반의 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 판사에게 위법규칙심판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처분기준)

교육처분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기준으로 판사가 선고한다.

제26조(회부학생)

- ① “회부학생”이란 학생자치법정에 의해 교육처분을 부과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27조 (학생회원의 교육처분)

- ① 판사는 전교회장단을 제외한 학생 회원에게 교육처분을 부과할 때 탄핵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판결의 배경이 된 규칙에 이의가 있을 시 위법규칙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8조(제척의 원인)

- ①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이 피해자인 때
 2.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3.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4. 판사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5.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6.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사료될 때

제2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판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판사가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기피신청의 관할)

- ① 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를 제외한 다른 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31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판사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 ② 기피당한 판사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판사가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기피당한 판사는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3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①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의 경우를 제외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31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35조(회피의 원인 등)

- ① 판사가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② 회피는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32조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3절 소송행위의 대리 및 보조

제36조(소송행위의 대리)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기타 소송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 ②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37조(보조인)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절 변호

제38조(변호인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9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인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변호인선임의 효력)

-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0조의2(대표변호인)

- ①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은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43조(판결, 결정, 명령)

- ① 판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4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장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45조(재판의 형식)

- ① 재판은 제조에 따라 이루어진 배심원을 기반으로 한 학생참여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판의 진행방식은 학생자치법정 재판규칙에 따른다.

제46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47조(재판서의 기재규정)

- ① 재판서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학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재판서의 서명 등)

- ① 재판서에는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판사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1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재판서의 등, 초본)

- ①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절 서류

제53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54조(조서의 작성방법)

-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
 2. 피고인, 피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를 하지 않을 때의 그 이유
-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 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판사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검증 등의 조서)

-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자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7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판사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
 2. 재판장, 검사의 성명
 3. 피고인, 대표자, 변호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학생참여재판의 여부와 이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7.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8.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9. 제54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10.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1.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2. 변론의 요지
13.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4.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5.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8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54조제3항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판사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0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62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63조(공판정에서의 녹음 및 영상녹화)

- ①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 ② 학생자치법정은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 검사에게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회부학생의 교육처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회부학생의 교육처분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재판장에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2.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제64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장에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판장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절 피고인의 소환

제66조(소환)

재판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7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8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학번, 위반사실,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9조(소환장의 송달)

-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출석, 동행명령)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절 압수와 수색

제71조(압수)

- ①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재판장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

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2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73조(수색)

- ①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74조(보안상 비밀과 압수)

- ① 학교 보안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생활관 및 그 호실은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책임자는 학교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75조(업무상비밀과 압수)

검사, 변호사, 학생회장, 학생부장 또는 기타 동아리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6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영장의 방식)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학번, 위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영장의 집행)

압수·수색영장은 검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집행을 주도할 수 있다.

제79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0조(집행의 보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또는 담당 책임자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81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82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83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84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85조(영장집행과 통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6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① 생활관 및 그 호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교내 건물 또는 보안상 제한된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8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통제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제8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다.
- ③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9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재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③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93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 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절 검증

제94조(검증)

재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95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6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97조(신체검사와 소환)

재판장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98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책임자 또는 기타 관리인 등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99조(준용규정)

제74조, 제82조 내지 제86조, 제88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절 증인신문

제100조(증인의자격)

학생자치법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01조(보안상 비밀과 증인자격)

- ① 교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학교가 보안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학교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② 학교는 학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02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검사, 변호사, 학생회장, 학생부장 또는 기타 동아리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한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증인의 소환)

- ① 학생자치법정은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 ②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04조(소환불응)

- ① 재판장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교육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처분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중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처분을 명하기 전에 증인을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5조(준용규정)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06조(증인의 선서)

- ①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07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단, 사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급속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증의 전적이 있는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09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0조(증인신문의 방식)

- ① 증인인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는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1조(개별신문과 대질)

-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① 재판장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신문의 청구)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재판장은 증인의 업무,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16조(동행명령)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11절 감정과 통·번역

제117조(감정)

학생자치법정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8조(선서)

-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06조제3항, 제4항과 제107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19조(감정보고)

-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대리 제출할 수 있다.

-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영상녹화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0조(법정 외의 감정)

- ① 학생자치법정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1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① 감정인은 필요한 때에는 학생자치법정의 허가를 얻어 교실, 생활관, 기타 생활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물건의 파괴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위반사실, 들어갈 장소, 검사한 신체,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감정인의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9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2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23조(당사자의 참여)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제8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4조(감정의 촉탁)

- ① 학생자치법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식 경험있는 자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학생자치법정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영상녹화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5조(통역)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 자의 진술에는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26조(번역)

국어와 영어가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27조(준용규정)

제117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은 전2항에 준용한다.

제12절 증거보전

제128조(증거보존의 청구와 그 절차)

-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29조(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